

이천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심사보고서

1996. 10. 30

산업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1996년 10월 10일 이천시장
- 나. 회부일자 : 1996년 10월 11일
- 다. 상정일자 : 제7회 이천시의회(임시회)
 - 제1차(96. 10. 23) 산업위원회 상정
 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(제안설명자 : 건설도시국장 조병돈)

가. 제안이유

- 이천시 공공하수도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자금의 운영에 효율을 기하기 위함.

나. 주요골자

- 1) 이천시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은 하수도 점용료, 사용료, 일반회계 전입금 및 기타 세입으로 함(안 제2조)
- 2) 이천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세출은 하수도,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 및 공공 하수 관거설치 유지관리비, 차입금 이자와 하수도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함(안 제3조)

3.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(전문위원 김태신)

- 이천시 공공 하수도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하수도법 제21조(사용료 등)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자금의 운용에 효율을 기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써, 본 조례에 대한 세입을 하수도 점용료, 사용료, 일반회계 전입금 및 기타 세입으로 규정하고 있어, 이천시 하수도 사용조례(안)과 연계하여 심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사료됩니다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론요지 : 생 략

6. 심사결과 : 부 결

7. 기타사항 : 없 음